제1020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정안 (산림청)	1. 산사태 예방·대비 조치 적용 대상(강화) o 산사태는 산림 뿐 아니라 인근 민가 및 축사, 농경지에까지 인명·재산 피해를 발생시킴에 따라「산림재난방지법」제정 시 적용 범위를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까지 확대 o 동 제정안은 산사태 규정 적용 대상인 '산림과 잇닿는 토지'를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등을 거쳐, 산사태 등의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50미터 이내의 토지로 규정 ▶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조	규제 심사 완료
		2. 산불 방지 조치(신설) o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불피우는 행위 금지, 화기·인화물질·발화물질 제거, 산불 신고, 그 밖에 산불의 발생 ·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 ▶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11조	규제 심사 완료
		3. 방제사업 설계 감리자 대상(강화) o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시행 시 설계 · 감리를 할 수 있는 자를 '나무병원', '지역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'로 제한하고,「산림자원법 시행령」제25조 및 별표2에 따른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법인을 제외함 ▶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29조	규제 심사 완료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2	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정안 (산림청)	1.산림병해충 방제명령 이행기간(강화) o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이행기간(90일)을 규정해 방제명령 법적 구속력 확보 ▶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30조	규제 심사 완료
		2. 산림재난방지 국제협력사업 시행기관 지정 기준(신설) o 산림재난 방지와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의 수집 · 분석 등을 시행할 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규정 – 조직 및 인력 기준, 시설 기준 ▶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43조	규제 심사 완료
3	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(환경부)	1. 비산배출시설의 업종별 시설관리기준(강화) o 플레어스택 연소구간 총발열량을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한 측정장비가 돌발적인 고장 등 비정상 작동으로 인해 모니터링이 중지될 경우 – 비정상 작동시 48시간 내 고장원인 · 개선계획 등을 관할 환경청에 보고하고, 해당 비정상 작동 장치는 45일 이내에 조치한 후 30일 이내 재결함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연간점검보고서에 첨부 · 제출할 것 ▶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 ▶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3	규제 심사 완료
4	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(기후에너지환경부)	1. 녹색기업에 대한 지정취소 사유(강화) o 녹색기업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환경법령 보완 및 신설 *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처분 일부 추가, 「화학제품안전법」, 「환경오염시설법」 처분 신설 ▶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7	규제 심사 완료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 환경표지 등의 인증취소(신설) ㅇ 환경표지의 인증 취소사유가 되는 환경 관련 법령의 위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– 환경 관련 법령의 종류를 각호에 열거 – 위반의 정도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 ▶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조	규제 심사 완료
		3. 인증 무단사용자에 대한 위반내용 등 공개(신설) ㅇ 위반사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위반내용 등 공개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– 위반내용과 근거 법령 – 해당 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– 해당 재료 및 제품명 ▶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의3	규제 심사 완료
5	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 제정안 (보건복지부)	1.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(교원, 장비)(신설) ㅇ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 중 인력 및 장비 관련 세부사항 규정 – (전임교원 확보율) 4년제 대학 60% 이상, 전문대학 50% 이상 – (자격소지 전임교원) 전임교원 중 1급 응급구조사 자격 또는 의사 면허소지자의 비율 70% 이상 ▶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 제2조, 제3조	규제 심사 완료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6	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개정안 (소방청)	1.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일부 개정(강화) ㅇ 소화수조의 구조안전성을 별표2의 검토항목에 따라 확인하여야 함 ▶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4조	규제 심사 완료